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50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5077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3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김성은

변론종결 2022. 11. 9.

판결선고 2023. 1.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3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51,9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6행의 “별지 목록 제1의 가항”을 “별지 목록 제1의 가, 나항”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G은 별지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토지는 C이 D에게 명의 신탁해 둔 것인데, F가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허위로 설정해둔 E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내용으로 C, D, F 등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09. 4.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법검찰청 2009년 형제15563호)

카. G은 F가 실제로는 C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1. 30. 피고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C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내용 등으로 F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4. 20. 위 부동산은 C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699호).】

○ 제3면 제17행 “[인정근거]”에 “갑 제11, 45의2, 45의3, 46의2 내지 4, 48의2호증,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D, F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 30.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C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1. 30.자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담보채권인 151,9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D, 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및 C이 2017년경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6, 27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 2호증, 갑 제11, 2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및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C과 모의하는 등 공동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C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로된 사실이 없어 C의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채권자인 원고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하였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예, 판사 서호원, 판사 이은명

별지